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물 화재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내화채움구조·방화댐퍼의 설치 대상 등을 확대하고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소방관진입창, 방화셔터 열감지기, 승강기 배연설비 기준 등 일부 미비사항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내화채움구조 적용대상 명확화 및 확대 (안 제14조제2항제2호)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화구획의 틈은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는 것이 중요하나, 내화채움구조 적용대상이 불명확함. 방화구획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급수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기준을 명확화하고 외벽과 바닥 사이 틈 외에도,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경우도 내화채움구조를 메우도록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나. 방화댐퍼 설치 대상 확대 (안 제14조제2항제3호)

제·배연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으나,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의 경우에만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제·배연 풍도를 통한 연소확대를 막기 위해 제·배연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

는 경우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방화댐퍼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다. 자동방화셔터 열감지 설치 기준 개선 (안 제14조제2항제4호)

자동방화셔터 설치시 감지기를 천장부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소방
법령에 따라 층고에 따라 감지기가 높은 경우 열감지기 사용이 불가
함. 층고가 높아(창고 등) 열감지기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라.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위치 기준 합리화 (안 제18조의2)

소방관 진입창 유리두께 기준이 가스충 두께를 포함하고 삼중유리
사용이 불가하여 결로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한편,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 규정과 난간의 최소 높이가 상충되어 노대 등의 창호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불가함. 따라서 가스충 두께는 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삼중유리(5mm 이하인 강화유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을 합리화 하고 노대 등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위치를 바닥에서 80~120cm 이내에 설치 가능하도록 단
서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을 “방화구획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틈이 생긴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 또는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나.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사이에 틈이 생기는 경우

다. 방화구획과 외벽 간의 틈이 생기는 경우

라. 그 밖의 방화구획에 틈이 생기는 경우

제1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환기·냉난방 또는 제연·배연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방

청장이 정하는 특수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2항제4호마목 중 “열을 감지한 경우”를 “열감지기 또는 다목 단서에 따른 특수감지기가 작동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를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18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말한다.

1. 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화구획의 틈을 내화채움성능이 인정한 구조로 메우는 단계
2.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냉난방 또는 제연·배연시설의 풍도에 제2항제3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하는 단계

제18조의2제5호 중 “창문”을 “창틀을 제외한 창호”로, “높이 1.2미터 이상”을 “높이 1미터 이상”으로 하고, “80센티미터”를 “80센티미터(다만,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의 창호에 불가피하게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로 한다. 같은 조 제6호 다목 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유리”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유리로서 각 유리에 두께 5

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제19조제1항 중 “법 제49조제4항”을 “ 법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4항제2호”를 “법 제49조제5
항제2호”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를 “경우 해당 건축자재
를 설치·시공하는 시점에 유효한”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
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직통계단”을 “제8조제2항에 따른 직통계단”으
로 한다.
제30조제1호아목 본문 중 “배연설비를”을 “배연설비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
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배연설비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화채움구조 적용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방화셔터 열감지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4호, 제18조의2제5호 및 제6호, 제30조제1호아목 및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생략)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u>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2. <u>방화구획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틈이 생긴 경우</u> ----- ----- ----- ----- ----- ----- ----- ----- ----- ----- -----
<신설>	가. <u>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 또는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u>
<신설>	나. <u>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사이에 틈이 생기는 경우</u>

<신 설>

<신 설>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
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
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
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나. (생 략)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
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
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나. (생 략)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
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

다. 방화구획과 외벽 간의 틈

이 생기는 경우

라. 그 밖의 방화구획에 틈이

생기는 경우

3. 환기·냉난방 또는 제연·배
연시설-----

-----,

-----.

가.·나. (현행과 같음)

4.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를 설치할 것 <단서 신설>

라. (생략)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③·④ (생략)

⑤ 제2항제2호에 다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채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창고시설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1. 개구부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 .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특수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현행과 같음)

마. 열감지기 또는 다목 단서에 따른 특수감지기가 작동하여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따른 -----

-----.

⑥ -----

-----.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

항 전단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
준(이하 이 조에서 “화재안전
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수막(水幕)을 형성
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
비

2. (생략)

<신설>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것을 말한다.

--

2. (현행과 같음)

⑦ 영 제18조의2제2항제1호나
목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말한다.

1. 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
는 방화구획의 틈을 내화채움
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우는
단계

2.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
냉난방 또는 제연·배연시설의
풍도에 제2항제3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하
는 단계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

1. ~ 4. (생략)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나. (생략)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신설>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① 법제4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1. ~ 4. (현행과 같음)

5. 창틀을 제외한 창호-----

-----높이 1미터 이상-----

--- 80센티미터(다만,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의 창호에 불가피하게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 --

6.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유리

라.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유리로서 각 유리에 두께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① 법제49조제3항-----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2. (생략)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① (생략)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한다.

1. ~ 6. (생략)

③ ~ ⑤ (생략)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 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5항제2호-----

-----.

1. 2.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경우 해당 건축자재를 설치·시공하는 시점에 유효한 --
--.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

--.

1. -----

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
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
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 4. (생략)

② (생략)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 .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른 -----

----- .

1의2. -----

제8조 제2항에

따른 직통계단----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 다. (생략)

라. ~ 사. 삭제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가. (생략)

나. 삭제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3. 4. (생략)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아. -----

--- 배연설비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 <단서 삭제>

2. -----
가. (현행과 같음)

다. 배연설비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할 것

3. 4.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988